

『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관내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추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재산현황

- 1) 시 설 명 :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
- 2) 위 치 : 칠곡군 석적읍 중리 495-10번지 일원(구미하수처리장 내)
- 3) 시설규모
 - 대지면적 : 9,903m²
 - 건축면적 : 829.76m²
 - 연 면 적 : 1785.65m²
- 4) 시설용량 : 150m³/일
- 5) 설 치 비 : 175.5억원(국 140.4, 도 10.5, 기 10.5, 시 14.1)
- 6) 처리방법 : BCS 공법 처리 후 구미하수처리장 연계처리

7) 준 공 일 : 2020년 6월

8) 주요시설

구 분	주 요 시 설 명
지하1층	송풍기실
지상1층	전처리실, 약품실, 호퍼실(1), 투입실, 창고, 실험실, 방풍실
지상2층	호퍼실(2), 전기실, 사무실, 제어실, 문서고, 휴게실, 체력단련실, 화장실(남), 화장실(여), 샤워실, 탈의실, 탕비실, 다용도실

나. 위탁기간 : 2020년~2025년(5년)

다. 위탁방법 : 위·수탁 협약체결에 의함

라. 위탁운영비

(단위:천 원)

구분 \ 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위탁운영비	2,030,259	2,091,167	2,153,902	2,218,519	2,285,074

※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 임

※ 1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% 반영

※ 산출기준 : 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(환경부, 2018.10.23.)’
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

마. 위탁사무
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
- 반입되는 가축분뇨 계량관리·자료관리·적정처리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·징수
-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3조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,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」 은
 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,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,
 -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향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